

#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

의안 번호	6
----------	---

제출년월일 : 2022. 7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-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통하여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운영 활성화 추진하고 지역 외식비 및 소비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착한가격업소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다.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라.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마.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바. 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 사항(안 제8조)
- 사. 영업자의 협조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아.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2022년 예산에 0.3억원 반영되었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22. 5. 26. ~ 2022. 6. 1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(기획실-7307(2022.05.23.)호)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기획실-7307(2022.05.23.)호)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(가족복지과-21725(2022.05.23.)호)

##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평창군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,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착한가격업소”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, 이·미용업,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·품질·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, 현지실사·평가 등을 통하여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.

**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**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4조(지정 및 취소)**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「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」(이하 “지정기준”이라 한다)에 따른다.

**제5조(사후관리)** ① 군수는 분기마다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,

위생·청결도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.

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)**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·운영
2. 착한가격업소 홍보
3.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7조(착한가격업소 지원)**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
2.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
3.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·하수도 요금 보조
4.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
5.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
6.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
7.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8조(물가모니터요원 운영)**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(이하 “모니터요원”이라 한다)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
  2.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, 위생·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
  3.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
  4.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
- ③ 군수는 모니터요원이 제2항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·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9조(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)**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, 관계 공무원 또는 모니터요원이 가격, 위생·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포상)**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「평창군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법령 발취

## 지방자치법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## 소상공인기본법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·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
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근거

- 해당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제1호

## 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경제건설국 일자리경제과장 이용화
연락처	(033) 330 -2496

[참고 1]

##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

### I 목적

-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지정 기준·절차요건 및 관리 등을 개정하여 착한가격업소 제도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 추진
- 착한가격업소 지원방안을 마련·시행함으로써, 소비자 물가안정 도모 및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

#### 《착한가격업소 적용범위 구체화》

-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및 절차,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자지단체 조례로 규정한 경우 그 조례에 따름

### II 지정(평가) 기준

#### 1 가격 기준 (45점)

- 가격 수준 : 해당지역의 평균 가격\* 미만 등 (20점)  
\* 해당 지자체의 특성(역세권, 공시지가 등)을 고려하여 평균가격 산정
- 가격 안정 노력 :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6개월 내 동결여부, 소비자 물가 상승률(금액)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 인상 여부 등 (15점)
- 저렴한 가격상품의 비중 : 업소의 총 서비스 제공 품목 중 저렴한 가격 상품의 비중 (10점)

#### 2 영업장 위생·청결 기준 (30점)

- 주방, 매장(주영업시설) 및 화장실 등의 위생·청결도 (30점)

#### 3 업소의 품질·서비스 기준 (20점)

- 이용만족도 부문 : 업소 이용 후 친절도 및 만족도 조사평가 (10점, 차등배점)
- 운영 및 시설 부문 : 업소 운영에 있어 소비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여부 평가 (각 5점)

※ 기준별 세부항목은 붙임2 평가표 참고



#### ④ 공공성 기준 (5점)

- 옥외가격 표시제, 원산지 표시제 등 각종 시책 이행여부 (5점)

#### ⑤ 가점 부여 기준 (10점)

- 봉사활동, 사회적 약자 배려 등 특정계층, 정부시책 등 사회적가치 반영
- 최근 3년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장 표창 여부 등 자치단체장이 10점 범위내에서 자율 결정

- 평가표(붙임 2)에 의거 평점 총합이 70점(가점포함) 이상 및 가격기준 평점이 29점 이상인 업소 중 상위 점수를 획득한 업소순으로 우선 선정

### Ⅲ 지정 절차

#### ① (공 고)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(시장·군수·구청장)

#### ② (신 청)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읍·면·동장, 소비자단체 등 추천 병행

-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가 지정신청서를 작성,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
- 읍·면·동장 및 직능단체협회나 소비자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추천

※ 지역 내 위생모범업소의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

#### <신청 배제>

-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
-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
-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
-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(신청일기준)
-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
- 프랜차이즈 업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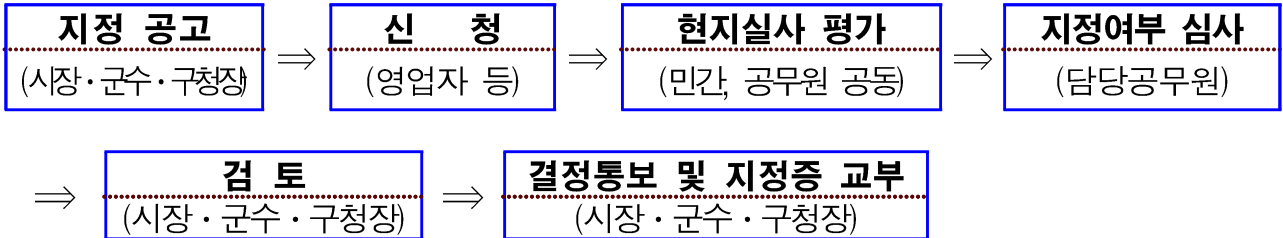
#### ③ (현지 실사평가)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민·관 공동으로 현지 실사 평가단\*을 구성하고, 평가표(붙임 2)에 의거 지정기준 적합 여부 평가

\* 공무원,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, 소비자 단체 등 참여

- ④ **(최종 결정 및 통보)**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현지실사·평가 후, 지정 여부 검토를 거쳐 영업자에게 3일 이내 서면으로 결정·통보

※ 통보시 착한가격업소 인증서(표찰)를 조속히 교부할 것.

< 지정 절차 >



- ⑤ **(등록)**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정 후, 업소정보를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내용을 입력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

## IV 지정 업체수 및 지정시기

- ① **(지정 업체수)** 해당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다양한 개인 서비스 품목이 관리·지정 될 수 있도록 노력
- ② **(지정 주기)** 연 1회, 6월말을 원칙으로 하되 시·군·구 신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시 지정도 가능
- ※ 매년 6월중 착한가격업소 실태 조사 후 현황 보고 (6월말 기준, 행안부)

## V 사후 관리

- ① **(정기 재심사)** 시도 반기별 실시
- (절 차) 신규 지정을 위한 절차를 준용
  - (상반기 6월, 하반기 12월) 부적격업소 지정취소, 신규신청 업소 지정 및 기존업소 중 적격업소 여부확인 후 재지정
- ② **(수시 재심사)** 시도지사 또는 행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
- (대 상) 지역별 평균물가보다 가격을 인상한 업소,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, 영업자가 변경된 업소\* 등
- \* 업소의 영업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개월 이내 재심사. 단, 업소의 영업자가 1인

에서 공동 명의자로 변경되거나, 공동 명의자 중 일부가 변경되었더라도 당초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 명의자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제외

- (절 차) 「현지실사 평가」 생략 가능
- (기 능) 수시 재심사를 통해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여부만 결정

### ③ (지정 취소)

- 정기 또는 수시 재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
  - ※ 붙임 2 평가표에 의거 평점의 합이 70점 미만인 업소는 지정 취소 원칙
- 당해 시·군·구 관할 지역 외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
  - ※ 착한가격업소 지정 승계는 변경 소재지 지자체의 기준을 따름

### ④ (지정 취소 후 조치)

- 착한가격업소 인증서 회수, 각종 인센티브 제공 중지 등
  - ※ 착한가격업소 현황 정비 및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서 즉시 삭제

[참고 2]

## 강원도 내 착한가격업소 지원 관련 조례 현황

연번	구 분	조례명	제·개정일
1	강원도	강원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	22.05.06
2	고성군	고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	21.12.17
3	삼척시	삼척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	21.11.12
4	동해시	동해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	21.05.14
5	양양군	양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·관리에 관한 조례	21.04.07
6	춘천시	춘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	20.03.02
7	속초시	속초시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	19.11.01
8	원주시	원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	19.04.12
9	영월군	영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	17.10.27